

의안번호	제556호
의결 연월일	2024년 4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 
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

발의자	박용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4월 12일

#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제

##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

(박용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4월 12일

발의자 : 박용규·김현문·이정범  
박병천·박재주·유상용  
이양섭 의원

### 1. 제안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1. 1. 12. 개정, 2022. 1. 13. 시행)과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2021. 10. 19. 제정, 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주민이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·폐지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해야 했던 조항이 삭제 되고,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존치 이유가 사라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가.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제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: 생략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 
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 
기준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**제19조(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)**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·청구대상·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## 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(약칭: 주민조례발안법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5호, 2021. 10. 19., 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자)**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“청구권자”라 한다)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“지방의회”라 한다)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